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의안.....2면
-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검토보고서.....77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5. 9.(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의원외6인】
2.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희재의원외6인】
3.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4.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5.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8.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4년 4월 일
발의자 : 여노연,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장익봉
이화숙

1. 주 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2. 제안이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행정추진 상 잘못에 대한 원인 규명과 시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바람직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4년 4월 일
발의자 : 도회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1. 개정이유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변경
- 나. 제4조제3호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변경

3. 조 례 안 : 불 입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4. 29. ~ 5. 3.)
- 나. 관련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u>10만원</u> 지급</p> <p>2. (생 략)</p> <p>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 월 <u>5만원</u></p> <p>4.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 -----</p> <p>-----</p> <p>-----</p> <p>-----.</p> <p>1. -----</p> <p>----- <u>15만원</u> -----</p> <p>2. (현행과 같음)</p> <p>3. -----</p> <p>----- <u>8만원</u></p> <p>4. (현행과 같음)</p>

참 고**관련 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4년 4월 일
발의자 : 김종식,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여노연, 장익봉 이화숙

1. 제정이유

성주군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의료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군수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다. 지원 및 지원방법, 감독 및 실적보고(안 제5조~안 제8조)
- 라.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안 제9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4. 29. ~ 5. 3.)
- 나. 관련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4호 라목에 따라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장의 책무) 수행기관의 장은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
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예방접종 등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실적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해당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관련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4년 4월 일
발 의 자 : 장익봉,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이화숙

1. 개정이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기간 공헌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 포상(혜택)에 대한 세부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3. 조 례 안 : 붙 임

4.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4. 29. ~ 5. 3.)

나. 관련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4.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5.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2에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란 다음에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5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별표1의2 비고 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봉사자를 말한다.

②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성주군 다자녀가정란 다음에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감경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100분의 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14조의2(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u>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창 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4.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5.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제2호의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제5호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p>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의2</p> <p>[별표1의2] <개정 2019. 10. 10., 2020. 10. 5., 2021. 11. 11.></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감면대상자</th> <th style="width: 10%;">감면율</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시설사용료 감면</td> <td>국가보훈대상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rowspan="3">※ 비수기 주중에 한함.</td> </tr> <tr> <td>장애인</td> </tr> <tr> <td>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td> </tr> <tr> <td>다자녀 가정</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rowspan="3">※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td> </tr> <tr> <td>성주군민</td> </tr> <tr> <td>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td> </tr> <tr> <td>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rowspan="2">※ 비수기 주중에 한함.</td> </tr> <tr> <td>「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인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바.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자.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일요일~목요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p>3.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 조건에 따른다.</p>	구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성주군민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5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의2</p> <p>[별표1의2] <개정 2019. 10. 10., 2020. 10. 5., 2021. 11. 11.></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감면대상자</th> <th style="width: 10%;">감면율</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시설사용료 감면</td> <td>국가보훈대상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rowspan="3">※ 비수기 주중에 한함.</td> </tr> <tr> <td>장애인</td> </tr> <tr> <td>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td> </tr> <tr> <td>다자녀 가정</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rowspan="3">※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td> </tr> <tr> <td>성주군민</td> </tr> <tr> <td>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td> </tr> <tr> <td>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rowspan="2">※ 비수기 주중에 한함.</td> </tr> <tr> <td>성주군 우수지원봉사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rowspan="2">※ 비수기 주중에 한함.</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인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마.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바.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의 경우 성주군과 결연을 맺은 지역, 기관, 단체를 말한다.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자.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차. 성주군 우수지원봉사자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봉사자를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일요일~목요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4일)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p>3.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 조건에 따른다.</p>	구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성주군민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성주군 우수지원봉사자	50%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5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구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성주군민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50%																																										
구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가정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성주군민																																											
	자매결연 도시 지역주민·기관·단체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성주군 우수지원봉사자	50%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5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대상</th> <th style="width: 30%;">감면 요율</th> </tr> </thead> <tbody> <tr> <td>면제</td> <td>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td> <td>100분의 100</td> </tr> <tr> <td rowspan="8">감경</td> <td>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td> <td rowspan="8">100분의 80</td> </tr> <tr> <td>「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td> </tr> <tr> <td>「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td> </tr> <tr> <td>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td> </tr> <tr> <td>「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td> </tr> <tr> <td>「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td> </tr> <tr> <td>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td> </tr> <tr> <td>성주군 다자녀가정</td> <td>100분의 50</td> </tr> <tr> <td>성주군민</td> <td rowspan="2">100분의 30</td> </tr> <tr> <td>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td> </tr> </tbody> </table> <p>○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p> <p>○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p>	구분	대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대상</th> <th style="width: 30%;">감면 요율</th> </tr> </thead> <tbody> <tr> <td>면제</td> <td>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td> <td>100분의 100</td> </tr> <tr> <td rowspan="8">감경</td> <td>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td> <td rowspan="8">100분의 80</td> </tr> <tr> <td>「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td> </tr> <tr> <td>「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td> </tr> <tr> <td>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td> </tr> <tr> <td>「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td> </tr> <tr> <td>「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td> </tr> <tr> <td>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td> </tr> <tr> <td>성주군 다자녀가정</td> <td rowspan="2">100분의 50</td> </tr> <tr> <td>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td> </tr> <tr> <td>성주군민</td> <td rowspan="2">100분의 30</td> </tr> <tr> <td>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td> </tr> </tbody> </table> <p>○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p> <p>○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p>	구분	대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구분	대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구분	대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성주군민	100분의 30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참 고

관련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일괄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이 일괄시행(2024.5.17.)됨에 따라 국가유산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에 대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으로 변경된 법제명, 조문, 용어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문화재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향토문화유산	향토유산
문화재 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4. 4. 22. ~ 2024. 5. 1.)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4. 4월 중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성주군 조례 제 호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 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을“(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향토문화유산 지정·관리”를 “향토유산 지정·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부터 제4항까지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이 지정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을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을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2.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 지정·등록을 위한 조사·용역사업

제21조제2항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재현황”을 “유산현황”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향토유산을 보수할 때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향토문화유산”를 “향토유산”로 한다.

제2조(「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성주군 한개마을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한개마을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인”을 “국가민속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유산”으로, “문화재 지정구역”을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와 그 문화재가”를 “문화유산과 그 문화유산이”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5조(「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지정유산 또는 국가 및 시·도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으로, “조례”를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안

제7조(「성주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제5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등록문화재”를 “등록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토지이용·교통·환경·정보통신·문화재·건축주택·농림·방재”를 “토지이용·교통·환경·정보통신·국가유산·건축주택·농림·방재”로 한다.

[별표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다목 중 “ 「문화재보호법」 ”을 “ 「국가유산기본법」 ”으로, “문화재,”를 “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성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성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개정)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4호 중 “문화재 보존·관리”를 “국가유산 보존·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예술·문화재”를 “문화예술·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성주군 경관 조례」 의 개정)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현상변경”을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으로 한다.

[별표 2] 성주군 경관심의 소위원회 대상 및 규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사회기반시설

구 분	대상 및 규모
공원·조경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문화체육 시 설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 라목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토목시설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경관조명	○ 야간경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국가유산 -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설계변경	○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및 구조물, 시설물이 공사비의 30%이상 변경 시 ○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심의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

제11조(「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성주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정보매체의 대상 시설물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 안내시설물의 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개정)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일표 중 ③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신청	1건	500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 해져 오는 <u>문화유산</u> 체계적으로 보 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지역 <u>문화유산</u> 보전· 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향토문화 유산</u>”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u>문화재 보호법</u>」(이하 “<u>법</u>” 이라 한다)에 따라 <u>문화재</u> 지정·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주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 료</p> <p>2. 지역 <u>문화재</u>로서 보존가치가 있 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p> <p>3. (생 략)</p> <p>제3조(<u>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 칙</u>) <u>향토문화유산</u>의 보호는 원형유 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p>	<p><u>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u></p> <p>제1조(목적) ----- ----- <u>국가유산</u> ----- ----- ---- <u>국가유산</u> ----- -----.</p> <p>제2조(정의) ----- “<u>향토유산</u>” ----- -----.</p> <p>1. 「<u>국가유산기본법</u>」----- ----- <u>국가유산</u> ----- ----- -----</p> <p>2. --- <u>국가유산</u>-----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u>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u>) <u>향 토유산</u>----- -----.</p>

제2장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제4조(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한 안건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생략)

제2장 향토유산위원회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향토유산위원회 -----
-----.

1. 향토유산-----

2. 향토유산-----

3. 향토유산-----

4. 향토유산-----

5. ----- 향토유산 -----

6. ----- 향토유산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유산 -----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화재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장 향토문화유산 지정·관리

제11조(지정) ① 군수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구역이나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문화유산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별지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⑤ -----
국가유산 -----.

제7조(전문위원) ① -----
-- 국가유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향토유산 지정·관리

제11조(지정) ① ---- 비지정국가유산 -----
----- 향토유산 -----
-----.

② ---- 향토유산-----

-----.

③ -----
----- 향토유산-----

-----.

④ ---- 향토유산-----

-----.

제12조(지정해제) ① -----
----- 향토유산-----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된 경우
- 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고시) ①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보존·관리) ①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 멸실, 도난, 훼손, 보관 장

----- . -----

----- .

- 1. 향토유산이 지정국가유산-----

- 2. 향토유산-----

- 3. 향토유산-----

② ---- 향토유산-----

----- .

③ ----- 향토유산-----

----- .

제13조(고시) ① -----
----- 향토유산-----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존·관리) ① -----
----- 향토유산-----

----- .

② ----- 향토유산 -

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수·주변정비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한다.

⑥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보호·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읍장·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6조(기록의 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에게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방안·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③ ----- 향토유산-----

-----.

④ (현행과 같음)

⑤ ---- 향토유산-----

-----.

⑥ ---- 향토유산-----
-----.

제15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

-----.

② ---- 향토유산-----

-----.

제16조(기록의 작성 보관) ① -----
향토유산-----
-----.

② -----
----- 향토유산-----

-----.

제4장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

제17조(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되지 않은 군 관내에 산재한 향토문화유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문화자산으로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보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보수대상) ①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역사·예술·학술·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불명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수·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사업의 종류) ① 보수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사업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4장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

제17조(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수사업) ----- 향토유산 -----
----- 향토유산 -----

-----.

제18조(보수대상) ① -----
향토유산-----

- 국가유산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향토유산 -----

-----.

제19조(보수사업의 종류)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 지정·등록을 위한 조사·용역사업

3. ----- 향토유산 -----

제21조(시행공고) ① (생략)

②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보수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현황, 보수·관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자격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할 때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설계 및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와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22. 3. 10. 조례 제 2440호>

② (생략)

제21조(시행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향토유산-----

----- 유산현황-----
-----.

제22조(보수자격 등) ① ----- 향토유산을 보수할 때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

----- 향토유산의 -----
-----.

② (현행과 같음)

□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 ----- ----- 「국가유산기본법」----- -----.

□ 성주군 한개마을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인</u> 성주군 한개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가민속유산</u> ----- -----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국가민속 문화재로 지정된</u> 성주 한개마을 <u>문화재 지정구역</u> 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u>국가민속유산</u> ----- <u>문화유산</u> <u>지정구역</u>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u>문화재와 그 문화재가</u>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u>문화</u> <u>유산과 그 문화유산이</u> ----- -----.

2. (생략)

제8조(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

- 1. ~ 6. (생략)
- 7. 경미한 문화재 보수사업
- 8. (생략)

②·③ (생략)

제9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가 회원이 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1. 한개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세대구성원 중 1명
- 2. 한개마을 문화재 지정구역 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가옥을 임차(사용)하여 3년 이상 거주해 오고 있는 세대구성원 중 1명

② ~ ⑤ (생략)

제16조 (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협의체에서 실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한개마을 내 경미한 문화재 보수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2.·3. (생략)

②·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 7. ---- 문화유산 ----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등) ① -----

-----.

- 1. ----- 문화유산 -----

- 2. ----- 문화유산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 (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

① -----

-----.

- 1. ----- 문화유산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법 제9조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2. · 13. (생략)</p>	<p>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2. · 13. (현행과 같음)</p>

□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으로 한다.</p>	<p>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지정유산 또는 국가 및 시·도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 ----- ----- ----- 「국가유산기본법」 ----- ----- 국가유산보호구역 ----- ----- -.</p>

□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안</p> <p>5.·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안</p> <p>5.·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p>	<p>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 ----- ----- -----.</p>

- 1. ~ 4. (생략)
-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생략)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생략)

- 6. ~ 8. (생략)

- ② ~ ④ (생략)

제53조(개별법령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49조 및 제54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7조(구성) ① ~ 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다. (현행과 같음)

- 6. ~ 8.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별법령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록국가유산-----

-----.

제5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토지이용·교통·환경·정보통신·문화재·건축주택·농림·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생략)

[별표 27]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가. · 나. (생략)

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문화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의

④ -----

-----.

-----.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교통·환경·정보통신·국가유산·건축주택·농림·방재 -----

⑤ (현행과 같음)

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산기본법」-----
-----지정국가유산, -----

<p>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p> <p>라. ~ 사. (생략)</p>	<p>-----</p> <p>라. ~ 사. (현행과 같음)</p>
---	--------------------------------------

□ 성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성주 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p>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국가유산</u> -----</p>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분장사무) ① ~ ⑥ (생략)</p> <p>⑦ 문화예술과의 분장사무의 대강 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문화재 보존·관리</u> 및 문화재 정 책 업무 전반</p> <p>5. · 6. (생략)</p>	<p>제4조(분장사무)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가유산 보존·관리</u> ----- -----</p> <p>5.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u>문화예술·문화재</u>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p> <p>⑧ ~ ⑭ (생략)</p> <p>⑮ 새마을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6. <u>문화재</u> 관련 허가 등 민원 처리</p> <p>6. ~ 11. (생략)</p>	<p>7. ----- <u>문화예술·국가유산</u> -----</p> <p>⑧ ~ ⑭ (현행과 같음)</p> <p>⑮ -----</p> <p>1. ~ 6. (현행과 같음)</p> <p>6. <u>국가유산</u> -----</p> <p>6. ~ 11. (현행과 같음)</p>
--	--

□ 성주군 경관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5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단, 경관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3. <u>문화재보호법</u> 및 <u>문화재청현상변경</u>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p> <p>4. (생략)</p>	<p>제25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국가유산기본법</u>」, 「<u>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u>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및 <u>국가유산청 현상변경</u> -----</p> <p>4. (현행과 같음)</p>

□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p>[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p> <p>정보매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표지판, 이정표, 노선도(버스 등), 지역 및 <u>문화재</u> 안내도, 도로교통 표지 • 디지털 영상매체, 장애인 정보제공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등 	<p>[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p> <p>-----</p> <p>-----</p> <p>-----<u>국가유산</u>-----</p> <p>-----</p> <p>-----</p>
<p>[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p> <p>안내시설물</p> <p>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p> <p>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 <u>문화재</u>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p>	<p>[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p> <p>-----</p> <p>-----</p> <p>-----</p> <p>-----</p> <p>-----</p> <p><u>국가유산</u>-----</p> <p>-----</p> <p>-----</p> <p>-----</p>

□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p>[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72 521 735 712"> <thead> <tr> <th data-bbox="172 521 735 629">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72 629 735 712">③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td> </tr> </tbody> </table>	구분	③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table border="1" data-bbox="810 521 1374 712"> <thead> <tr> <th data-bbox="810 521 1374 629">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10 629 1374 712">③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td> </tr> </tbody> </table>	구분	③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구분					
③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구분					
③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 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편의 도모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나. 반의 확정기준 제한 사항 변경(제3조)

- 50호(戶) 제한없이 자연마을 취락 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반 조정 가능

다. 반 증설(별표)

- [기존] 성주읍 백전2리 5반 ⇒ [추가] 6반(성주스위트M)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다. 입법예고 : 2024. 3. 6. ~ 2024. 3. 27.(20일간)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2331(2024. 2. 19.)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9054(2024. 2. 20.)호)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를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동 주택단지 등 여건을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별	리 명	분 리 면	반 명 칭	구 역
총 계			798	
성 주 읍	계		157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백 전 리	백전2리	(생 략)	(생 략)
			6	629 성주스위트M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u>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u></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읍면별</th> <th style="width: 15%;">리 명</th> <th style="width: 15%;">분리면</th> <th style="width: 15%;">반명칭</th> <th style="width: 15%;">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797</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성주읍</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56</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백전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전2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읍면별	리 명	분리면	반명칭	구 역	총 계			797		성주읍	계		156		백전리	백전2리	(생략)	(생략)	<p>제1조(목적) -----</p> <p>제7조제6항-----</p> <p>-----</p> <p>-----</p> <p>제3조(확정기준) -----</p> <p>-----</p> <p>-----다만, <u>자연마을 취락 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여건을</u>-----</p> <p>-----</p> <p>-----</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읍면별</th> <th style="width: 15%;">리 명</th> <th style="width: 15%;">분리면</th> <th style="width: 15%;">반명칭</th> <th style="width: 15%;">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798</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성주읍</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5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백전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전2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629 성주 스위트 M</td> </tr> </tbody> </table>	읍면별	리 명	분리면	반명칭	구 역	총 계			798		성주읍	계		157		백전리	백전2리	(생략)	(생략)				6	629 성주 스위트 M
읍면별	리 명	분리면	반명칭	구 역																																								
총 계			797																																									
성주읍	계		156																																									
	백전리	백전2리	(생략)	(생략)																																								
읍면별	리 명	분리면	반명칭	구 역																																								
총 계			798																																									
성주읍	계		157																																									
	백전리	백전2리	(생략)	(생략)																																								
			6	629 성주 스위트 M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연간 50천원(반장활동비 50천원 * 1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안 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1) 목적

- 가야산의 우수한 산림치유 환경요소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

2) 용도

- 성주 치유의 숲 조성

3) 기간

- (취득) 2024. 10. ~ 12.(예정)
- (처분) 2024. 10. ~ 12.(예정)

4) 규모

- 취득 : 가천면 용사리 산123 , 가천면 법전리 산144 (2필지)
931,201m²
- 처분 : 벽진면 용사리 산251 , 벽진면 봉학리 산64-1 ,
초전면 용봉리 산67 (3필지) 931,298m²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m², 천원)

구분	항목	소재지	지번	지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토지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273,508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179,913	
		소계		931,201	453,421	
처분	토지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104,868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5,818	243,622	
		초전면 용봉리	산67	235,000	85,540	
		소계		931,298	434,030	

6) 계약방법

- 상호교환

나.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변경)

1) 목적

- 가)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함
- 나) 국가지정문화재(성주성산동고분군) 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대상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1필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함.

2) 용도 :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취득(변경)

3) 기간 : 2023. 01. ~ 2024. 12.

4) 추진현황

- 2022. 11. :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22. 12. : 2023년 당초예산 확보(5필지, 750백만원 국525, 도112.5, 군112.5)

- 2023. 6. : 성산리 산119 매입(10,711m², 135백만원)
- 2023. 7. : 성산리 899 매입(899m², 2백만원)
- 2023. 11.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23. 12. : 사업비 이월(600백만원, 국420, 도90, 군90)
- 2024. 1. : 성산리 산68 매입(24,595m², 175백만원)

5) 소요예산

- 매입비 : 당초 750,000천원, 변경 438,000천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일반회계)

6) 규모 : 51,591m²(증 1필지 16,133m²)

- 필지 세부내역

(단위:m², 백만원)

연번	재 산 표 시				매입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완료	예정		
계		4필지		51,591	318	120		
1	성산리	899	전	152	8		이*언	
2	성산리	산119	임	10,711	135		배*길	
3	성산리	산159	목장	30,198		400	김*익	매각철회
4	성산리	산159-2	목장	332		5	김*익	매각철회
5	성산리	산159-3	임	17,669		200	김*익	매각철회
6	성산리	산68	임	24,595	175		도*훈	
7	성산리	산66	임	16,133		120	배*희	예정

7) 계약방법 : 협의취득

8) 기대효과

-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민족문화 계승과 문화적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함.

202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 수 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4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1건	처분	임야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230,480	104,868	10~12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산림청	
	처분	임야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5,818	465,818	243,623				
	처분	임야	초진면 용봉리 산67	417,721	235,000	85,540				
	취득	임야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606,448	273,508				
	취득	임야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324,753	179,913				
계	부지	처분	벽진면 용암리 산251 외 2필	1,114,019	931,298	434,031				
		취득	가천면용 사리 산1 23 외 1필	931,201	931,201	453,421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부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24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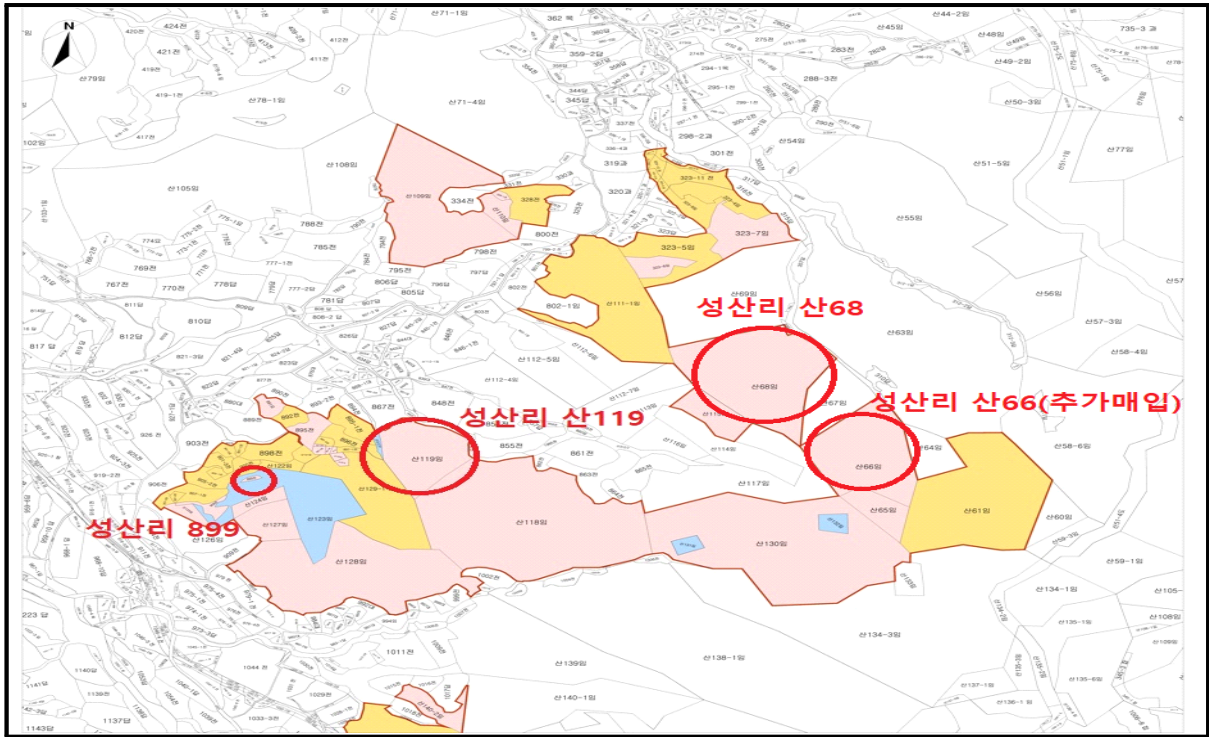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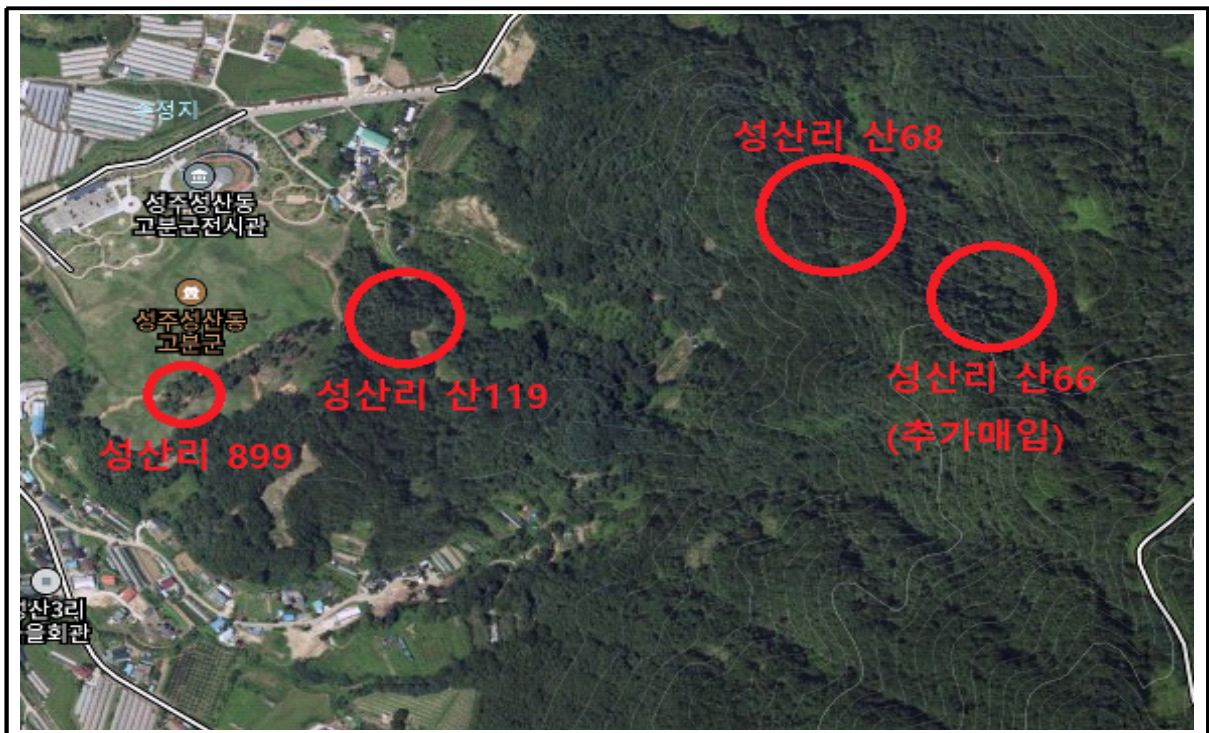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국가지정문화재성산동고분군 구역내 사유지 매입



〈사업부지 위치도〉



〈위성사진 위치도〉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회관 조례의 목적, 위치, 기능(안 제1조~제3조)
- 나. 입주단체, 시설의 이용, 운영 및 위탁, 지원(안 제4조~제7조)
- 다.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원상복구(안 제8조~제11조)
- 라.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준용(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편성
- 다. 기 타
 - 성별영향평가 : 완료[가족지원과-11006(2024. 2. 29.)호]
 - 규제심사 : 완료[기획예산실-2989(2024. 3. 7.)호]
 - 입법예고 : 완료[2024. 3. 13. ~ 4. 2. (21일간)]
 - 비용추계서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성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위치는 성주읍 경산리 481-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주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

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성주군 보훈회관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추계는 연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산출에 있어 추산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반영하여 운영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사무관리비	3,840	3,840	4,032	4,234	4,446	20,392
	○공공운영비	28,365	28,365	29,783	31,272	32,836	150,621
	소계	32,205	32,205	33,815	35,506	37,282	171,013
□ 총 비용		32,205	32,205	33,815	35,506	37,282	171,01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32,205	32,205	33,815	35,506	37,282	171,013
민간							
기타							
합계		32,205	32,205	33,815	35,506	37,282	171,013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32,205,000		
사무 관리비	청사환경관리 소모품구입	600,000	50,000원 * 12월 = 600,000	
	화장실소모품구입	1,800,000	150,000원 * 12월 = 1,800,000	
	정수기임차료	1,440,000	30,000원 * 4대 * 12월 = 1,440,000	
	소 계	3,840,000		
공공 운영비	건물유지관리비	2,865,000	3,000원 * 955㎡ = 2,865,000	
	냉난방기유지 관리비	1,100,000	100,000원 * 11대 = 1,100,000	
	전기요금	9,600,000	800,000원 * 12월 = 9,600,000	
	상하수도요금	2,400,000	200,000원 * 12월 = 2,400,000	
	승강기 안전정기검사	400,000	400,000원 * 1회 = 400,000	
	승강기 안전관리용역비	3,600,000	300,000원 * 12월 = 3,600,000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600,000	300,000원 * 12월 = 3,600,000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2,640,000	220,000원 * 12월 = 2,640,000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2,160,000	180,000원 * 12월 = 2,160,000	
	소 계	28,365,000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참외산업특구 계획이 변경 고시(2023.8.4.)됨에 따라 참외산업특구 및 특화산업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주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법률 용어 변경(제1조, 제6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특구홍보용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 (별표7) 신설 및 표시조항 삽입(제6조)

- 광고물 상세내용 조례 명시 조건부 승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 2024. 2.
- 2) 입법예고 : 2024. 3.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로, “에서는”을 “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으로,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을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신 설>

특구 홍보용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

종류	개수 (면수)	규격 (가로×세로×높이)	주소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	1 (2)	2.35m×1.8m×5.1m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539	일반도로 30m 이상
지주이용간판	1 (2)	2.35m×1.8m×5.1m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600-15	일반도로 30m 이상

관련법령 발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34조)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과 공공건축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5. 9.(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희재의원외6인】
○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변경

나. 제4조제3호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4. 29. ~ 5. 3.)

나. 관련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 평균 참전복지수당 15만 3천원에 맞춰 성주군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은 5만원 인상된 15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3만원 인상된 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성주군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의료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군수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다. 지원, 지원방법 및 실적보고, 감독(안 제5조~안 제8조)
- 라.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4. 29. ~ 5. 3.)
- 나. 관련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기간 공헌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 포상(혜택)에 대한 세부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4. 29. ~ 5. 3.)

나. 관련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기간 공헌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 일괄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이 일괄시행(2024.5.17.)됨에 따라 국가유산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에 대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으로 변경된 법제명, 조문, 용어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문화재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향토문화유산	향토유산
문화재 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4. 4. 22. ~ 2024. 5. 1.)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4. 4월 중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 일괄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과 조문,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인용조항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안을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상위법(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편의 도모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나. 반의 확정기준 제한 사항 변경(제3조)

- 50호(戶) 제한없이 자연마을 취락 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반 조정 가능

다. 반 증설(별표)

- [기준] 성주읍 백전2리 5반 ⇒ [추가] 6반(성주스위트M)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4. 4. 22. ~ 2024. 5. 1.)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4. 4월 중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성주읍 156개 반에서 1개 반이 추가된 157개 반으로 증설시키고, 확정기준의 50호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확정기준의 삭제로 기존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입해 오는 주민들의 의견충돌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 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1) 목적

- 가야산의 우수한 산림치유 환경요소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

2) 용도

- 성주 치유의 숲 조성

3) 기간

- (취득) 2024. 10. ~ 12.(예정)
- (처분) 2024. 10. ~ 12.(예정)

4) 규모

- 취득 : 가천면 용사리 산123 , 가천면 범전리 산144 (2필지)
931,201m²
- 처분 : 벽진면 용사리 산251 , 벽진면 봉학리 산64-1 ,
초전면 용봉리 산67 (3필지) 931,298m²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m², 천원)

구분	항목	소재지	지번	지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토지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273,508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179,913	
		소계		931,201	453,421	
처분	토지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104,868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5,818	243,622	
		초전면 용봉리	산67	235,000	85,540	
		소계		931,298	434,030	

6) 계약방법

- 상호교환

나.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변경)

1) 목적

가)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지정문화재(성주성산동고분군) 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대상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1필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함.

2) 용도 :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취득(변경)

3) 기간 : 2023. 1. ~ 2024. 12.

4) 추진 현황

- 2022. 11. :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22. 12. : 2023년 당초예산 확보(5필지, 750백만원 국525, 도112.5, 군112.5)
- 2023. 6. : 성산리 산119 매입(10,711㎡, 135백만원)
- 2023. 7. : 성산리 899 매입(899㎡, 2백만원)
- 2023. 11.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23. 12. : 사업비 이월(600백만원, 국420, 도90, 군90)
- 2024. 1. : 성산리 산68 매입(24,595㎡, 175백만원)

5) 소요 예산

- 매입비 : 당초 750,000천원, 변경 438,000천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일반회계)

6) 규모 : 51,591㎡(증 1필지 16,133㎡)

- 필지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재 산 표 시				매입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완료	예정		
계		4필지		51,591	318	120		
1	성산리	899	전	152	8		이*언	
2	성산리	산119	임	10,711	135		배*길	
3	성산리	산159	목장	30,198		400	김*악	매각철회
4	성산리	산159-2	목장	332		5	김*악	매각철회
5	성산리	산159-3	임	17,669		200	김*악	매각철회
6	성산리	산68	임	24,595	175		도*훈	
7	성산리	산66	임	16,133		120	배*희	예정

7) 계약방법 : 협의취득

8) 기대효과

-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민족문화 계승과 문화적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함.

다. 수륜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

1) 목적

-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주)가야호텔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해주고 있던 일반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용도 : 수륜면 백운리 1282-17 외 1필 일반재산 처분

3) 기간 : 2024. 05. ~ 2024. 10.

4) 규모

- 수륜면 백운리 1282-17 대지 3,963㎡ 중 2,629㎡
 - 수륜면 백운리 1282-18 대지 2,267㎡ 중 2,125㎡
- 총 4,754㎡ 정도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비고
소계				6,230 중 4,754	602	
토지	수륜면 백운리	1282-17	대지	3,963 중 2,629	333	
토지	수륜면 백운리	1282-18	대지	2,267 중 2,125	269	

6) 매각방법 : 지명경쟁입찰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

- 본 안건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2필지 931,201㎡와 성주군 소유 토지 3필지 931,298㎡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의 기준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이고, 성주군 소유 토지의 기준가격은 약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 가야산의 우수한 산림치유 환경요소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변경) >

-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매입과정에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대상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1필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입 대상은 성주읍 성산리 산 66번지로 부지 면적 1만 6,133㎡로 매입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환경을 제외하는 지장물을 정비하고, 민족문화 계승을 도모하며, 문화발전에 기대되므로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륵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 >

- 본 안건은 장기간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주가야호텔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해주고 있던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모는 수륵면 백운리 1282-17번지의 대지 3,963㎡ 중 2,629㎡와, 수륵면 백운리 1282-18번지의 대지 2,267㎡ 중 2,125㎡로 총 4,754㎡ 정도입니다. 매각하는 대지의 기준가격은 6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방재정 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재산 처분 시 일괄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 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회관 조례의 목적, 위치, 기능(안 제1조~제3조)
- 나. 입주단체, 시설의 이용, 운영 및 위탁, 지원(안 제4조~제7조)
- 다.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원상복구(안 제8조~제11조)
- 라.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준용(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편성
- 다. 기 타
 - 성별영향평가 : 완료[가족지원과-11006(2024. 2. 29.)호]
 - 규제심사 : 완료[기획예산실-2989(2024. 3. 7.)호]
 - 입법예고 : 완료[2024. 3. 13. ~ 4. 2. (21일간)]
 - 비용추계서 :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성주군 보훈회관의 운영 방법과 필요시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입주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성주참외산업특구 계획이 변경 고시(2023.8.4.)됨에 따라 참외산업특구 및 특화산업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주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법률 용어 변경(제1조, 제6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특구홍보용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 (별표7) 신설 및 표시조항 삽입(제6조)

- 광고물 상세내용 조례 명시 조건부 승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 2024. 2.
- 2) 입법예고 : 2024. 3.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상위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 성주참외산업특구 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성주읍 성산리와 선남면 관화리에 지주 이용간판을 통해 참외산업특구 및 특화산업의 대내외적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